

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나97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나979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45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 선고 2018. 5. 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4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9. 24. 접수 제93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항소이유로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민희진

판사이지혜

별지